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48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서영석 · 이해식 · 윤준병
박홍배 · 한정애 · 소병훈
허종식 · 김태년 · 노종면
이수진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휴가를 쓰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종사자의 휴가 등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시급히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현재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은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

덧붙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제35조의5 신설 및 제5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등”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사회복지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35조의3을 제35조의4로 하고,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의 휴가·휴직·교육·훈련·질병·산업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각각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이하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기획 및 평가
2. 제4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총괄관리 및 지원

3.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 및 대체인력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운영 및 대체인력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도에 두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이하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인력의 모집·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대체인력의 교육·훈련

3. 대체인력 파견지원 신청 접수 및 파견지원

4. 그 밖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 및 대체인력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지원에 드는 비용은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파견지원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 및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체인력 파견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

설의 범위와 파견지원의 기준·방법·절차,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와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중전의 제35조의3)의 제목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을 “(종사자 채용 등에서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제35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대체인력 파견지원을 받은 경우 파견지원을 신청할 때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로 채용하려는 사람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종사자로 채용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

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장”으로, “종사자”는 “대체인력”으로 각각 본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의3제1항”을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의3제2항”을 “제35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의5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장 사회복지시설</u>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u>사회복지시설</u>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u>사회복지시설</u>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2. (생략) ③ (생략) <u><신설></u>	<u>제3장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등</u> 제35조의2(종사자) ① ----- -----<u>시설</u>----- ----- -----. ② ----- ----- -----<u>시설</u>-----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35조의3(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u>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의 휴가·휴직·교육·훈련·질병·산업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사업을 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u>

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각각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이하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기획 및 평가
2. 제4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총괄관리 및 지원
3.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 및 대체인력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운영 및 대체인력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도에 두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이하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인력의 모집·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대체인력의 교육·훈련

3. 대체인력 파견지원 신청 접수 및 파견지원

4. 그 밖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 및 대체인력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지원에 드는 비용은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파견지원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 및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u>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 사항)</u> ① <u>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u>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u>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u>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범위와 파견지원의 기준·방법·절차,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와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5조의4(종사자 채용 등에서의 준수사항)</u> ① -----<u>시설</u>----- ----- ----- ----- ----- ----- ----- ----- ② -----<u>시설</u>----- ----- ----- ----- ----- ----- ----- ③ <u>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제35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대체인력 파견지원을 받</u>
--	--

<신 설>

은 경우 파견지원을 신청할 때
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된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5(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사
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로 채용하려는 사람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
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
다. 다만, 그 종사자로 채용하
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
신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
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
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
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는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장”으로, “종사자”는 “대체인력”으로 각각 본다.

제58조(과태료) ① -----

-----.

1. 제35조의4제1항-----

2. 제35조의4제2항 또는 제3항-----

3. 제35조의5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조

② ~ ④ (생 략)	<u>회를 하지 아니한 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	--------------------------------------